

충청북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 · 2007.3.22(목)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기 봉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7일

○ 2006.11.13 :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 2007. 1.17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2007.1.1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균형발전본부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가 됨에 따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3. 제안이유

가.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으로
6월~1년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인 60%~
70% 탑승율 보전을 통항 국제항공노선 취항 유도

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내·외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안 제3조).

(1)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에 따른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기타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원내용(안 제4조)

- (1)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국제항공 노선의 평균 탑승율 및 화물량이 항공사업자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경우에 결손금 또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일부
- (2) 지원기준방법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6.12.1)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된 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가 되겠음.

나.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항공 노선 신규개설이 필요하나 항공사업자가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므로 청주국제공항 신규취항에 따른 결손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기준·방법·기간은 도지사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계획 및 결손금 재정지원 연간 소요액, 항공사업자의 결손금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